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800 제출연월일: 2024. 10. 21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호 중 "허가일부터"를 "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지조성의 허가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허가의 취소) 시장・군수	제12조(허가의 취소)
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	
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	
다.	.
1. <u>허가일부터</u> 1년이 지나도 사	1.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
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	<u>터</u>
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	
경우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